

제1689호

2023. 4. 14.

발행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조 성 명
편집인 : 정 책 홍 보 실 장 오 은 향
전 화 : 0 2 - 3 4 2 3 - 5 0 8 5

구 보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8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5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7

규 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99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63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7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71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66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67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931호	도시계획시설(돌산체육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6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940호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7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964호	자동차 상속이전·말소 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 7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본 구보의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행정정보→행정알림→구보/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 의뢰 및 편집문의 (☎ 02-3423-5085 / 모사전송 02-3423-8820)

◎ 구보발간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간)이며, 발간일 3일전(화요일)까지 게재의뢰

D-3일 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최종편집

→

D일 발간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강 남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8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종료되거나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
2.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된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3년마다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재정관리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지원대상 및 기간)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강남구는 기업체가 밀집되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구직을 위한 1인 청년가구 비율이 높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임차료 및 생활물가가 높아 자립준비청년 정착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현실임

이에 자립준비청년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함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5조 및 제6조).

다. 지원대상 및 기간과 예산의 지원을 명시함(제7조 및 제8조).

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
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본 조례는 강남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정한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서울 혁신교육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혁신을 위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적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참고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22. 12. 31. 자로 종료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를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3.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삭 제>
2.“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삭 제>
3.“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4.“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5.“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1. ----- ----- 「동물보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 8. (생략)

<신설>

<신설>

제9조(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생략)

<신설>

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2. ~ 4.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5.“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9조(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신 설>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3.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지원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의 보호·학대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서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는 삭제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 (제2조)

나.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조문 신설(제1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의 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2013년 제정된 이후 개정하지 않고 장기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함.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된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제3조 및 제4조)
- 다. 자살실태조사(제5조)
- 라.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제6조 ~ 제8조)
- 마. 자살예방의 날 등(제9조 ~ 제1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청소년심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건강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나 폭력 등으로 정신건강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수행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2.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
3.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연계
4.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6. 정신건강 위기대응 업무 및 지역 협력체계 운영·지원
7. 재난심리지원 등 일반인·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현안업무
8.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심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치료,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4. 학원가 등 지역특화 정신건강증진사업
5.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후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정신건강증진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정신건강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등

(제5조 ~ 제8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생활체육시설 운영자, 교직원 및 학생 등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신청하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2. 제6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일부개정된 이후 장기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함. 그동안 개정된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4조)

다. 응급처치 교육(제5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 등
(제6조 및 제7조)

마. 응급의료 지원, 표창(제8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
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
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장기준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장애인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운전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제3조)

다. 보험금은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신청하도록 함(제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저지대 주
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에 준한 지원 대상으

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안전취약계층 등”이라 하며,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2.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소 제거 및 방지 등 안전자문
3. 재난예방 시설물 설치 및 지원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등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8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u> <u>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u> <u>2.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소 제거 및 방지 등 안전자문</u>	<u>제38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13세 미만의 어린이</u> <u>2. 65세 이상의 노인</u> <u>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u> <u>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u> <u>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u> <u>6.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u> <u>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② 구청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저지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에 준한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안전취약계층 등”이라 하며,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2.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소 제거 및 방지 등 안전자문
3. 재난예방 시설물 설치 및 지원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등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강남구의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근거 마련(제3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
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강남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7조의 기금 존속기한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의 운용종료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조 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7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란 18세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휴일에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를 말한다.
6.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개설·신고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③ 구청장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제5조(기관의 의무)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3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기본계획 심의
2.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아 야간·휴일 적정 진료수가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자
3.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외래진료서비스 제공 강화로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정의(제2조)
- 나.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제4조)
- 다.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관리·감독(제6조)
- 라. 자문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
- 마. 위원회 구성 및 임기(제9조, 10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조 성 명 인

2023년 4월 14일

규	칙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99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상위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폐지함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70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96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4.

강 남 구 청 장

-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 대치동 963번지 일대
- 정비구역의 면적 : 29,532.20㎡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구태열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1, 3층 1호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0개월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 4. 10.
-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가. 대지면적 : 21,442.80㎡
 - 나. 건 폐 율 : 25.18%
 - 다. 용 적 륜 : 237.38%
 - 라. 높 이 : 53.98m
 - 마. 용 도 : 공동주택 9개동(4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규 모 : 지하3층/지상18층, 연면적 90,601.5972㎡
- 변경의 사유 및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건축면적 (건폐율)	5,379.21㎡(25.09%)	5,398.92㎡(25.18%)	
연면적 (용적률)	90,081.3352㎡(237.41%)	90,601.5972㎡(237.38%)	
층수	지하3층 ~ 지상18층	지하3층 ~ 지상18층	

- 부대복리시설 면적 변경 및 근린광장 선형 변경 등

- 기타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5)에 비치 보관